

근로소득자(☐ 일용근로자 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☐ 기타) ☐ 사업소득자

이 용
의료기관

지급계좌	금융기관:	예금주:	계좌번호:
과거 신청내역 (1년 이내)	☐ 1차 신청 ☐ 2차 신청 이상		
중복수혜 확인 (해당 체크 √)	- 국민기초생활보장, 서울형 기초보장, 긴급복지[생계급여] ☐ 있음 ☐ 해당 없음 - 산재보험, 실업급여 ☐ 있음 ☐ 해당 없음		

[가 구 원]

주민등록등록표상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신청자의 ① 배우자 ② 직계혈족(부모, 자녀)
 ③ 직계혈족(자녀)의 배우자 ④ 배우자의 직계혈족(시부모, 장인, 장모) ⑤ 배우자의 자녀

가구원성명	관계	주민등록번호	가구원 성명	관계	주민등록번호

소득·재산 조 사	신청(조사) 시점에서 차세대 행복e음으로 공적 조회되는 소득·재산을 우선 반영함을 인정합니다. ※ 동 신청서를 접수한 보장기관의 장이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 제7조 및 제19조에 따라 지원 대상자의 선정 및 확인조사 등을 목적으로 가구원에 대한 동의 없이 조사 가능 함	☐ 동의함 ☐ 동의하지 않음 동의자: _____ (서명 또는 인)
지원금 지급	서울형 입원 생활비(서울형 유급병가) 지원금 지급은 입원/진료/검진 발생 30일 전부터 지원금 “지급 시점”까지 서울시민으로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.	
환수조치	신청서를 허위 작성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거나,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금을 받게 한 경우, 중복수혜 등 부정수급 한 경우 ‘서울형 입원 생활비(서울형 유급병가) 지원금’을 즉시 환수하고 해당 법률에 정한 바에 따라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.	

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	1. 개인정보 활용 목적: 동 신청서를 접수한 보장기관의 장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(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) 및 관련 조례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선정 및 확인조사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활용 2. 활용할 개인정보와 동의요청 범위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, 직종, 국민건강보험가입형태, 근로 여부, 소득·재산·근로(사업)상태에 관한 정보, 사회보장급여의 수혜 이력에 관한 정보, 그 밖에 대상자를 선정·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 3.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- 소득·재산 조사, 중복수혜확인, 대상자 관리, 만족도조사 및 효과평가를 위해 필요한 정보 제공 및 취약계층 통계자료 추출 등 - 제공기간: 서울시, 보건복지부, 근로복지공단, 고용노동부(한국고용정보원), 국민건강보험공단, 서울형 입원 생활비지원(서울형 유급병가) 효과평가 평가기관 4. 개인정보 보유 및 파기: 5년 5. 상기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, 제공 거부 시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(서울형 유급병가)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	
정책수립 및 사업평가 등 설문· 모니터링 동의	서울형 입원 생활비지원(서울형 유급병가)과 관련하여 정책수립 및 사업평가, 통계를 위한 설문 및 모니터링에 참여하고 동의합니다.	동의자: _____ (서명 또는 인)
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	1. 이용사무(이용목적) : 서울형 입원 생활비지원(서울형 유급병가) 신청 2. 공동이용 행정정보명(6종): 주민등록표 등·초본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, 사업자등록증명, 임금계좌 확인정보,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, 건강검진결과통보서 3. 정보주체(본인) 동의사항 -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 서류(공동이용 행정정보)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※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 제출하여야 합니다.	☐ 동의함 ☐ 동의하지 않음 대상자: _____ (서명 또는 인)

※ 유의사항

서울형 입원 생활비지원(서울형 유급병가) 신청을 위해 작성·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.

담당자 확 인 사 항	1. 의료기관 종별, 질병 분류, 직업 분류의 자료 수집은 서울형 입원 생활비지원(서울형 유급병가) 제도의 수요자 군의 특성을 파악하여 향후 제도 평가, 모니터링, 홍보 활용 등을 목적으로 한다. 2. 본 사항은 담당자가 참고자료(의료기관 종별, 질병 분류, 직업 분류기준)를 참고하여 작성한다.	담당자: _____ (서명 또는 인)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직업 분류	☐ 1. 종교·사회복지 관련직 ☐ 2. 교육·정보통신·공학 관련직 ☐ 3. 문화·예술·방송·체육 관련직 ☐ 4. 돌봄·보건·의료·간병 관련직 ☐ 5. 가사·음식·여행·숙박·미용·오락 관련직 ☐ 6. 판매·영업·금융·보험 관련직 ☐ 7. 운전·운송·유통 관련직 ☐ 8. 청소·경비·기타서비스 관련직 ☐ 9. 건설·제조·기계·설비·생산 관련직 ☐ 10. 기타 직종
의료기관 종별분류	☐ 1. 의원급(의원, 치과의원, 한의원) ☐ 2. 병원급(병원, 치과병원, 한방병원) ☐ 3. 종합병원 ☐ 4. 상급종합병원
질병 분류	☐ 1.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 ☐ 2. 신생물 ☐ 3. 혈액, 조혈기관, 면역장애 ☐ 4. 내분비, 영양, 대사질환 ☐ 5. 정신 및 행동장애 ☐ 6. 신경계통 질환 ☐ 7. 눈 및 눈 부속기 질환 ☐ 8. 귀 및 유도의 질환 ☐ 9. 순환계통 질환 ☐ 10. 호흡계통 질환 ☐ 11. 소화계통 질환 ☐ 12. 피부 관련 질환 ☐ 13. 근골격계 질환 ☐ 14. 비뇨생식계통 질환 ☐ 15. 임신, 출산, 산후기 질환 ☐ 16. 출생전후기에 기원한 질환 ☐ 17. 선천성 및 염색체 질환 ☐ 18. 손상, 중독, 외인에 의한 질환 ☐ 19. 코로나19 관련 ☐ 20.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외래치료

위와 같이 「서울특별시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(지원신청 및 지원 결정)」 제1항 규정에 의거 서울형 입원 생활비지원(서울형 유급병가)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(대리 신청인) 성명 :

(서명 또는 인)

신청인과의 관계 :

(대리신청의 경우)

서울특별시 ○○○ 구 ○○○ 주민센터장 / ○○○ 보건소장 귀하

근로(사업)활동 및 소득 신고서

신청인	성 명		생년월일			
	주 소					
근로(사업)내역 (※ 입원·입원연계 외래진료· 공단 일반건강검진 전월 포함 3개월 간 이력 기재)	직장(사업장)명					
	직장(사업장)주소		(전화:)			
	근로자	구 분	년 월	년 월	년 월	
		월 근로일수(일)				
		3개월 간 총 근로일수				
사업자	사업장 유지기간	년 월 일 ~				
소득내역			월 원 ※ 신청시점 현재 신청인 월 소득			

본인은 상기와 같이 근로(사업)내역과 소득을 신고합니다.

20 년 월 일
 신고자 : (서명 또는 인)

서울특별시 구 보건소장 / 주민센터장 귀하

유 의 사 항

※ 근로상태 및 소득을 허위로 신고,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서울형 입원 생활비(서울형 유급병가) 지원금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서울형 입원 생활비(서울형 유급병가) 지원금을 받게 한 자는 ‘형법 제228조(공정증서원본 등의 부실기재)’에 의거하여 5년 이하의 징역, 1,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.

[작성 예시]

근로(사업)활동 및 소득 신고서

신청인	성명	김서울	생년월일	00.00.00.	
	주소	서울시 중구 00대로			
근로(사업)내역 (※ 입원·입원연계 외래진료·공단 일반 건강검진 전월 포함 3개월 간 이력 기재)	직장(사업장)명		○○ 공장		
	직장(사업장)주소		서울시 중구 00대로 (전화:000-0000-0000)		
	근로자	구분	00년 00월	00년 00월	00년 00월
		월 근로일수(일)	15일	13일	10일
		3개월 간 총 근로일수	총 38일		
	사업자	사업장 유지기간	2023년 1월 10 일 ~ 현재까지		
소득내역		월 200만원 ※ 신청시점 현재 신청인 월 소득			

본인은 상기와 같이 근로(사업)내역과 소득을 신고합니다.

20 년 월 일
신고자 : (서명 또는 인)

서울특별시 구 보건소장 / 주민센터장 귀하

유의사항

※ 근로상태 및 소득을 허위로 신고,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서울형 입원 생활비(서울형 유급병가) 지원금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서울형 입원 생활비(서울형 유급병가) 지원금을 받게 한 자는 ‘형법 제228조(공정증서원본 등의 부실기재)’에 의거하여 5년 이하의 징역, 1,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.